

#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27,882,715	39,836,481
일반회계	1,092,851,669	32,785,550
특별회계	235,031,046	7,050,931
공기업특별회계	149,797,917	4,493,93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31,820	45,9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9,105,424	2,673,1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160,673	1,774,820
기타특별회계	85,233,129	2,556,994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736,164	142,085
수질개선특별회계	7,168,224	215,04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961,025	418,831
기반시설특별회계	457,620	13,729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92,593	2,77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50,987	64,53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53,602	196,608
주택사업특별회계	99,378	2,981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191,582	1,415,747
지하수특별회계	2,821,954	84,659

제 2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42,500천원으로 한다.